

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대안)

의안 번호	3133
----------	------

제안년월일 : 2025년 9월 4일

제안자 : 문화체육관광위원장

1. 대안의 제안경위

- 2025년 8월 11일 성흠제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(의안번호: 제2965호)과 같은 날 서울특별시가 제출한 「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(의안번호: 제3032호) 이상 2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,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, 각 개정 조례안의 내용을 통합·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.

2. 대안의 제안이유

- 역사·문화자원과 연계된 보행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책무 및 지원 규정을 추가하여, 서울의 정체성과 특성이 반영된 보행관광의 기반을 조성하고 보행자의 접근성 및 안전성을 향상 시키고자 함.
- 상위법령인 「관광진흥법」의 위임에 따라 서울시의 특성과 관광 여건을 반영하여 관광특구의 지정 요건 중 시설 기준을 신설하고,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고자 함.

3. 대안의 주요내용

- 가.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구분하여 규정함(안 제1조)
- 나. 보행관광의 기반 체계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4조 제4항 신설)
- 다. 보행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가하여 규정함(안 제7조제2항)
- 라. 관광특구 지정요건 중 관광시설 기준에 서울시 관광 여건을 반영하여 규정함(안 제8조 및 별표 신설)

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서울특별시”를 “「관광진흥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, 서울특별시”로 한다.

제2조제3호 중 “이란 관광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·운영되는”을 “이란”으로, “출자·출연하여”를 “출자·출연하여 관광산업 발전을 목적으로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촉진하기 위한”을 “촉진할 수 있는”으로, “노력한다”를 “노력하여야 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시장은 역사·문화자원과 연계된 보행거리를 중심으로 시민과 관광객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동하며 관광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.

제6조제2항제6호 중 “여건개선”을 “여건 개선”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관광발전”을 “관광 발전”으로, “심사하거나”를 “심사하는 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증진 및 관광자원 개발 등”을 “증진, 관광자원 개발 및 보행관광 활성화 등”으로 한다.

제8조를 제8조의2로 하고,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(관광특구 시설기준) 법 제7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관광 안내시설, 공공편의시설 및 숙박시설 등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.

제9조제3항 중 “다음연도”를 “다음 연도”로 한다.

제15조제1항제7호 중 “관광 상품”을 “관광상품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공유 재산”을 “공유재산”으로, “30이내”를 “30 이내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공유 재산”을 “공유재산”으로 한다.

제16조의3제2항 중 “등과 관련”을 “등에 관하여”로 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관광특구 지정요건 중 시설기준에 관한 적용례) 제8조 및 별표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관광특구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■ [별표]

서울특별시 관광특구 시설요건 세부기준(제8조 관련)

시설 구분	종류	구비기준
1. 공공편의시설	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, 공영주차장	가. 각 시설이 관광객이 이용하기에 충분할 것 나. 공중화장실 중 유료화장실은 별도로 표기할 것 다. 개방화장실은 공공기관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만 포함
2. 관광안내시설	관광안내소, 관광지 표지판	가. 각 시설이 관광객이 이용하기에 충분할 것 나. 관광안내소 중 외국인통역안내소는 별도로 표기할 것
3. 숙박시설	관광호텔, 수상관광호텔, 한국전통호텔, 가족호텔, 호스텔, 소형호텔, 의료관광호텔, 휴양콘도미니엄	「관광진흥법 시행령」 별표 1에 따른 등록기준에 부합하는 관광숙박시설이 한 종류 이상일 것
4. 휴양·오락시설	민속촌, 동물원, 식물원, 수족관, 온천장, 수영장,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, 산림휴양시설, 박물관, 미술관, 야영장, 관광유람선, 한옥체험시설, 종합유원시설	「관광진흥법 시행령」 별표 1에 따른 등록기준에 부합하는 관광객이용시설 또는 「관광진흥법 시행규칙」 별표 1의2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는 유원시설이 한 종류 이상일 것
5.接客시설	관광공연장, 관광유흥음식점, 관광극장유흥업점,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, 관광식당, 관광지원서비스시설, 국제회의시설	「관광진흥법 시행령」 별표 1에 따른 등록기준에 부합하는 관광객이용시설 또는 「관광진흥법 시행규칙」 별표 2에 따른 지정기준에 부합하는 관광 편의시설로서 관광객이 이용하기에 충분할 것
6. 상가시설	기념품판매점, 백화점, 전통시장, 면세점, 대형마트 등 관광객이 이용하는 상가시설	하나 이상일 것

<비고>

위 표의 시설은 「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제1항에 따른 통합제공시스템이나 행정안전부의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 개방시스템,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서울특별시</u> 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·지원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「 <u>관광진흥법</u> 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, <u>서울특별시</u> ----- -.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2. (생 략) 3. “관광진흥기관”이란 관광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·운영되는 <u>서울특별시</u> (이하 “시”라고 한다)가 투자 또는 <u>출자·출연하여</u> 설립·운영되는 기관을 말한다. 4. ~ 8. (생 략)	제2조(정의) ----- -----. 1. 2. (현행과 같음) 3. -----이 ^란 ----- ----- ----- <u>출자·출연하여</u> <u>관광산업</u> 발전을 목적으로 --.
제4조(시장의 책무) ① 시장은 시민의 관광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민의 관광활동을 <u>촉진하기</u> 위한 관광정책을 수립·시행하고, 이를 위한 재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<u>노력한다</u> . ② ~ ③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4조(시장의 책무) ① ----- ----- ----- <u>촉진할 수 있는</u> ----- ----- ----- <u>노력하여야 한다</u> . ②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<u>시장은 역사·문화자원과 연계된 보행거리를 중심으로 시민과 관광객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동</u>

④ 시장은 관광산업 발전과 관광 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앙정부, 자치구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.

제6조(관광진흥종합계획) ① (생략)

② 관광진흥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~ 5. (생략)

6.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

7. ~ 10. (생략)

③ (생략)

제7조(관광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)

① 시장은 국제 관광 촉진과 시의 관광발전을 위하여 국내외 관광홍보 활동을 조정하거나 관광 선전물을 심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관광객의 유치, 시민의 관광복지 증진 및 관광자원 개발 등 시의 관광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③ ~ ④ (생략)

<신설>

하며 관광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.

⑤ (현행 제4항과 같음)

제6조(관광진흥종합계획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-----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6. ----- 여건 개선-----

7. ~ 10. (현행과 같음)

③ (현행과 같음)

제7조(관광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)

① -----
관광 발전-----

----- 심사하는 등 -----
-----.

② 시장은 관광객의 유치, 시민의 관광복지 증진, 관광자원 개발 및 보행관광 활성화 등 시의 관광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제8조(관광특구 시설기준) 법 제70

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관광안내시설, 공공편익시설

제8조 (생 략)

제9조(문화관광해설사의 활용 등)

① · ② (생 략)

③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
현황 및 근무실태, 수행능력, 관광
객 만족도 등을 수시로 관리·점
검하여야 하며, 관리·점검 결과
는 다음연도 문화관광해설사의 운
영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.

④ · ⑤ (생 략)

제15조(재정지원) ① 시장은 법 제7
6조제2항 및 「지방자치단체 출자
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
률」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 내에
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
당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관광사업
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와 관광
진흥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
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1. ~ 6. (생 략)

7. 관광 상품 개발

8. ~ 14. (생 략)

② (생 략)

③ 시장은 「서울특별시 공유재산
및 물품관리 조례」에도 불구하고
법 제7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

및 숙박시설 등의 기준은 별표와
같다.

제8조의2 (현행 제8조와 같음)

제9조(문화관광해설사의 활용 등)

① · 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다음 연도 -----

④ · ⑤ (현행과 같음)

제15조(재정지원) ① -----

1. ~ 6. (현행과 같음)

7. 관광상품 ---

8. ~ 14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령 제64조의2에 따라 관광지등의
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공유 재산
임대료의 100분의 30이내에서 감
면할 수 있다.

④ 제3항에 따라 공유 재산의 임
대료를 감면받으려는 관광지등의
사업시행자는 시장에게 감면 신청
을 하여야 한다.

제16조의3(서울특별시 관광협의회
구성 등) ① (생 략)
② 협의회 임원과 회원 구성, 가입
절차, 회비 등과 관련 필요한 사항
은 정관으로 정한다.

----- 공유재산 --
----- 30 이내-----
-----.

④ ----- 공유재산-----

-----.

제16조의3(서울특별시 관광협의회
구성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-----
----- 등에 관하여 -----
-----.